

신·구조문대비표

[KOLAS-R-007]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1. 적용범위</p> <p><u>이 요령은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38조,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7조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6조, 공인메디칼시험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7조,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6조에 의하여 KOLAS 평가사, 품질책임자, 기술책임자, 내부심사자, 실무자 양성을 위한 KOLAS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건에 대하여 적용한다.</u></p> <p><u>이 요령에 대하여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 해석지침, ILAC-G3(시험기관인정기관에서 활용하는 평가사 교육과정 지침) 및 APLAC TR 001(평가사 교육과정 지침)도 이 요령의 일부로 본다.</u></p> <p>2. 관련 표준</p> <p><u>APLAC TR 001</u> 평가사 교육과정 지침</p> <p><u>ILAC-G3</u> 시험기관인정기관에서 활용하는 평가사 교육과정 지침</p> <p><u>KS Q ISO/IEC 17021 적합성평가 -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</u></p> | <p>1. 적용범위</p> <p>----- <u>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, KOLAS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,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,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,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의 ----- 기술책임자(또는 운영책임자), -----</u></p> <p>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2. 인용표준</p> <p><u>APAC CBC-002</u> -----</p> <p>----- <u>인정기구에서 활용하는 평가사 교육 지침</u></p> <p><삭 제></p> |

KS Q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-기본 사항 및 용어

<신 설>

KS Q ISO 19011 품질경영시스템 · 환경경영시스템 심사 지침

IATCA(국제심사원/훈련인증협회)심사원 평가과정 승인기준

<신 설>

3.1 교육기관 : 국가교정기관, 시험·검사기관, 표준물질생산기관, 메디칼시험기관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제도에 필요한 평가사, 품질책임자, 기술책임자, 내부심사자, 실무자 등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교육·훈련하는 기관

3.5 판정활동 : 인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합격/불합격의 결정을 내리는 행위

4.1 일반요건

(3) 교육내용이 이 기준에서 정한 교육과정 요건에 적합하며, 지속적으로 최신상태가 유지됨을 보장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KS Q ISO/IEC 17011 적합성평가 -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

----- 경영시스템 심사 가이드라인

<삭 제>

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 해석 지침

----- 교정기관, -----
----- 메디컬시험기관 -----

- 기술책임자(또는 운영책임자),

평가를 -----

4.1 일반요건

(3) -----

- 최신상태(온라인 교육 제공 포함)
가 -----

6) 교육기관 내부의 책임, 권한, 보고의 분담과 계통을 나타내는 조직도 및 계통도

7) 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(3) 교육기관은 소속 전임강사 1인 이상을 년 2회 이상 관련 국제인정협력기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또는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동 결과를 반영하고 그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인정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7.1 교육실시전 사전 전달사항

(2) 최소한 KS Q ISO/IEC 17025, KS Q 17020, KS Q ISO 19011, KS A ISO Guide 34, KS A ISO Guide 35, KS P ISO 15189, KS Q ISO/IEC 17043 및 적합성평가의 개요 및 인정기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7.2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문서

(2) KS Q ISO/IEC 17025, KS Q 17020, KS Q ISO 19011, KS A ISO Guide 34, KS A ISO Guide 35, KS P ISO 15189, KS Q ISO/IEC 17043 및 인정제도 관련법규와 기타 중요한 문서들의 사본

7.3 교육실시전, 교육생 수준 파악

(1)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개시 전에 설문서 또는 사이버 교육결과 확인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각 교육생이 인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지식을 숙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6) 교육기관 내부의 책임, 권한, 보고의 분담과 계통을 나타내는 조직도 및 계통도

7) 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<삭 제>

7.1 교육실시전 사전 전달사항

(2) ----- KS Q ISO/IEC 17020, ----- KS A ISO 17034, -----

7.2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문서

(2) ----- KS Q ISO/IEC 17020, ----- KS A ISO 17034, -----

7.3 교육실시전, 교육생 수준 파악

(1) -----
----- <삭 제> -----

-----.

7.4 교육과정의 내용

(1) 교육과정은 평가사양성교육, 내부 심사교육, 공통교육, 전문교육,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분한다.

(2) 제 1항의 교육과정은 각각 다음과 같이 재구분할 수 있다.

① 평가사 양성교육 : 신규양성교육, 선임양성교육

② 공통교육 : 사이버교육, KS Q ISO/IEC 17025 운영실무, KS Q 17020 운영실무, KS A ISO Guide 34/35, KS P ISO 15189 운영실무 및 KS Q ISO/IEC 17043 운영실무

③ 전문교육 : 측정불확도 추정, 정밀측정교육

④ 보수교육 : 평가사보수교육, 종사자보수교육

(4) 교육과정별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.

7.4 교육과정의 내용

(1) -----, 내부 심사자 교육, -----.

(2) -----

① -----

② 내부심사자 교육

③ ----- <삭 제> -----
----- KS Q ISO/IEC 17020 운영실무, KS A ISO 17034 운영실무, -----

④ -----

⑤ -----

(4) 교육과정별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.

| 과정명 | 주요내용 |
|----------|--|
| 평가사 양성교육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ILACG(안정기)에서 활용하는 평가사 교육 지침 및 APAC CECOR(평가사 교육과정 지침)의 교육프로그램 반영 - 입학제도 소개 - 적합성평가제도의 국제동향 - 품질보증과 품질관리개념 및 중요성 - 각 인정스킵 별 인정기준 및 해석 - 평가법 및 실습 - 측정의 소급성 개념 및 적용 - 측정불확도 - 측정도 시험에 대한 정의 운영 및 사후관리 - 평가사 자격기준 및 등록절차 - KS Q ISO/IEC 17011:612에서 요구하는 자격성 요구사항 |
| 내부심사자 교육 | - KS Q ISO 19011 : 경영시스템 심사 가이드라인 |

| 과정명 | 주요내용 | |
|----------|--|--|
| 평가사 양성교육 | - 국제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APLAC TR-001 : 평가사교육과정지침 ILAC-G3 : 시험기관 인정에서 활용하는 평가사 교육과정지침 | |
| 내부심사교육 | - KS Q ISO 19011 :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지침 - 해당 심사분야의 요건(KS Q ISO/IEC 17025, KS Q 17020, KS A ISO Guide 34/Guide 35, KS P ISO 15189, KS Q ISO/IEC 17043 등) - 사례분석(실습) - 이론: 50%, 실습: 50% | |
| 공통교육 | 사이버교육 | - KOLAS 제도 및 국제기준 - 운영실무 기본 및 기술적 사항의 이해 |
| | KS Q ISO/IEC 17025 운영실무 (교정시험기관) | -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 실무적용 - 숙련도시험운영기준 - 인정보고 사용기준 - 소규성 지침 등 |
| | KS Q 17020 운영실무 (검사기관) | -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 실무적용 - 샘플링 기법 - 인정보고 사용기준 - 소규성 지침 |
| | KS A ISO Guide 34/Guide 35 (표준물질생산기관) | - KS A ISO Guide 34 :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 - KS A ISO Guide 31 : 표준물질-인증서 및 라벨의 내용 - KS A ISO Guide 35 : 표준물질의 인증-일반적 및 통계적원칙 - 인정보고 사용기준 및 소규성 지침 등 |
| | KS P ISO 15189 운영실무 (메디칼시험기관) | -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 실무적용 - 숙련도시험운영기준 - 인정보고 사용기준 - 소규성 지침 등 |
| | KS Q ISO/IEC 17043 운영실무 (숙련도시험운영기관) | - KS Q ISO/IEC 17043 실무적용 - KS Q ISO 15528 : 시험소간 비교 숙련도시험용 통계적 방법 - 숙련도시험운영기준 - 인정보고 사용기준 - 소규성 지침 등 |
| 전문교육 | 측정불확도 추정 | - 통계이론 - 불확도 추정 및 분야별 사례분석 - 이론 : 50%, 실습 : 50% |
| | 정밀측정교육 (교정기관) | - 교정분야 중분류별 측정분야 |
| 보수교육 | 평가사 보수교육 | - 최신 인정기준 및 기술사항 등 정보공유 및 토의 - 최신 평가기법 및 사례 연구 등 |
| | 종사자 보수교육 | - 적합성평가체계 및 국제동향 - 인정기준 및 지침의 최신내용 해설 등 |

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| - 사례분석(실습) - 이론: 50%, 실습: 50% |
| 공통교육 | KS Q ISO/IEC 17025 운영실무 (교정기관) | - K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- KLASR01 KLAS 공인교정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- KLASR01 제도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|
| | KS Q ISO/IEC 17025 운영실무 (검사기관) | - K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- KLASR02 K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- KLASR02 제도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|
| | KS Q ISO/IEC 17043 운영실무 (표준물질생산기관) | - K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- KLASR02 K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- KLASR02 제도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|
| | KS A ISO 17043 운영실무 (표준물질생산기관) | - K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- KLASR09 KLAS 공인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- KLASR09 제도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|
| | KS P ISO 15189 운영실무 (메디칼시험기관) | - K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- KLASR10 KLAS 공인 메디칼시험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- KLASR10 제도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|
| | KS Q ISO/IEC 17043 운영실무 (숙련도시험운영기관) | - KLAS 인정제도 및 국제적합성평가 시스템 개요 - KLASR05 KLAS 공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- KLASR05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- KLASR05 제도에 따른 평가 및 인정 기준 - KS Q ISO 15528 : 시험소간 비교 숙련도시험용 통계적 방법 |
| 전문교육 | 측정불확도 추정 | - 통계이론 - KLASG02 측정값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- KLASG05 시험분야 측정불확도 추상에 관한 지침 - KS Q ISO/IEC Guide 983 - 불확도 추정 및 사례분석 - 이론 : 50% 실습 : 50% |
| | 정밀측정교육 (교정기관) | - KLAS 공인교정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(KLAS 공인교정기관 인정분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교육과장인 경우 통합 편성) - 측정소규성 및 유단위에 관한 사항 - 측정불확도 이론 및 사례연구(유용숫자 계산 등), 분야별 측정실무 이론과 실습 - 사례연구 및 실습시간 : 50% 이상 |
| 보수교육 | 평가사 보수교육 | - 최신 인정기준 및 기술사항 등 정보공유 및 토의 - 최신 평가기법 및 사례 연구 등 |
| | 종사자 보수교육 | - 적합성평가체계 및 국제동향 - 인정기준 및 지침의 최신내용 해설 등 |

(5) 평가사양성교육과정인 경우,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ILAC-G3(시험기관 인정기관에서 활용하는 평가사교육지침) 및 APLAC TR 001(평가사교육과정지침)의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하여야 한다.

1) 인정제도 소개

① 인정제도 배경 및 개요

② 인정기구 운영 및 규정

2) 적합성평가제도의 국제동향

3) 품질보증과 품질관리개념 및 중요성

4) 인정기준 및 해석

① KS Q ISO/IEC 17025, KS Q 17020, KS P ISO 15189, KS A ISO Guide 34/Guide 35 및 KS Q

<삭 제>

ISO/IEC 17043 등의 핵심요건 및 조건에 대한 설명과 토의

② 가상의 최초평가를 위한 사례 연구와 그룹 실습

③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문서화

④ 교육생실습 및 교육결과 보고서에 대한 강사평가 및 질의 응답

⑤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위한 절차와 실시(사례를 예시)

5) 평가기법 및 실습

① 부적합 사항보고(개별 실습) 및 가상 평가(그룹 실습)

② 평가준비, 평가반 임명, 평가보고 작성과 사후관리, 재평가 등 평가행정절차

③ 평가계획, 평가반 구성, 일정 수립, 문서검토, 체크리스트, 시작/종료회의, 보고, 기록유지 등을 포함한 평가과정

④ 질문 정보수집, 윤리적문제 등을 포함한 인적측면을 고려한 평가기법

⑤ 샘플링, 객관적 증거, 부적합사항, 관찰사항 문서화, 평가팀 회의, 부적합사항 분류, 노트작성, 회의 진행방법 등 평가실행

⑥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시정조치 확인방법

⑦ 선임평가사, 평가사, 평가사보, 기술전문가, 안내자, 피평가자의 역할

⑧ 기타 평가사의 활동사항(시험 절차, 컴퓨터 활용 및 소프트웨어

어에 대한 유효성검증, 기술자격
평가, 교정설비 평가, 숙련도시험
성과분석 등)

6) 측정의 소급성 개념 및 적용

7) 측정불확도

8) 숙련도 시험에 대한 정의, 운영
및 사후관리

9) 평가사 자격기준 및 등록절차

10) KS A ISO Guide 34 및 35의
요건 및 조건에 대한 설명과 토의

(6) 정밀측정요원 교육과정인 경우, 4.
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7. 교육과정운
영요건의 일반내용 이외에 다음 사항
을 만족하여야 한다.

1) 정밀측정 교육기관은 해당 분야
에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전임강사
를 최소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하
며, 전임강사는 교육과정을 계획,
관리, 실시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
야 한다.

2) 교육과정은 국가교정기관지정제
도운영요령 제14조의 측정분야를
기준으로 하여 운영하되, 유사한
교육과정인 경우 통합하여 교육과
정을 편성할 수 있다.

3) 교육내용에는 다음사항을 포함
하여야 한다.

① 측정소급성 및 SI단위에 관
한 사항

② 측정불확도 이론 및 사례연
구(유효숫자 계산 등)

③ 분야별 측정실무 이론과 실
습

4) 교육시간은 3~4일에 걸쳐 최소

20시간 이상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사례연구 및 실습시간이 전 교육시간의 50%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7.5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의 구성

(1) 교육과정에는 다음사항을 위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
- 1) 교육생 상호 소개
- 2) 교육과정의 형태·진행방법, 행정적 준비사항

- ① 교육생이 주의해야 할 사항
- ② 교육생 평가방법 등

(2) 강의, 토의, 분임조활동·사례연구, 실습등을 포함한 총 교육시간은 평가사양성교육의 경우 5일에 걸쳐 40시간, 내부심사교육, 공통교육, 전문교육은 과정별 적정한 시간으로 운영하되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하며, 보수교육은 5시간 이내로 한다. 단, 교육과정에 통역자가 활용될 경우 교육시간은 동시통역일 때는 25%까지, 순차통역일 때는 40%까지 연장되어야 한다.

(3) 식사, 휴식시간 또는 자유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은 교육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(4) 각 교육생이 강의활동의 일환인 워크샵, 사례연구, 평가원 역할분담 연기 및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에 총 교육시간 중 최소 30%이상을 할당해야 한다.

7.5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의 구성

(1) -----

- 1) ----- <삭 제> -----
- 2) -----

- ① -----
- ② -----

(2) -----

----- 37

시간, 내부심사자 교육, -----

----- 18시간 -----

(3) -----

-----.

(4) 평가사 양성교육의 경우, -----

7.6 교육과정의 규모

(1) 교육과정 당 교육생 수는 6명 이상 40명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평가사양성과정의 교육생 수는 20명 이하로 한다.

7.7 교재 및 교육시설

(3) 교육기관은 교육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, 분임토의실 및 교육에 활용되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.

7.8 교육생의 평가

(1) 관찰평가

4) 관찰평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
- ① 시간엄수, 교육생의 참가 태도
- ② 교육생의 발표력, 태도, 교육생이 작성한 문서에 나타난 이해 정도
- ③ 교육생의 평가기법
- ④ 평가사로서의 적성(평가사교육 해당)

(2) 필기/실기 평가

1) 인정기구의 장 또는 교육기관장은 제7.4조에의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필기/실기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통교육중

7.6 교육과정의 규모

(1) 보수교육을 제외한 교육과정 당 집합교육 교육생 수는 -----

7.7 교재 및 교육시설

(3) -----
----- 강의실(온라인 교육시설 포함), -----

7.8 교육생의 평가

(1) 관찰평가

- 4) -----
- ① -----
- ② <삭 제> -----
- ③ -----
- ④ -----

(2) 필기/실기 평가

1) -----

----- 보수교육에 -----

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<신 설>

[별표 1]

| 교육과정 | 대상자 | 평가사 | 내부심사자 | | 교정기관 | | 시험기관 | | 검사기관 | | 표준물질 생산기관 | | 메디칼 시험기관 | |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평가사 | 내부심사자 | 품질책임자 | 기술책임자 | 품질책임자 | 기술책임자 | 품질책임자 | 기술책임자 | 품질책임자 | 기술책임자 | 품질책임자 | 기술책임자 | 품질책임자 | 기술책임자 | 품질책임자 |
| 평가사양성교육 | | ○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내부심사교육 | | ○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취득방법 | 사이버교육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KS Q ISO/IEC 17025 운영실무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| | | | | | | | | |
| | KS Q 17020 운영실무 | | | | | | | ○ | ○ | | | | | | | | |
| | KS A ISO Guide 34/ Guide 35 운영실무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| | | | | |
| | KS P ISO 15189 운영실무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| | | | |
| | KS Q ISO/IEC 17043 운영실무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| |
| 취득방법 | 측정불확도 추정 | ○ | | ○ | ○ | ○ | ○ | | | ○ | ○ | | ○ | ○ | ○ | | |
| | 정밀측정교육 | | | ○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취득방법 | 평가사보수교육 | ○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종사자보수교육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
[별지 제1호 서식]

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38조,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7조,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6조, 공인메디칼시험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7조,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6조 및 교육기관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에 의거 KOLAS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.

8. 재검토기한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9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01일까지로 한다.

[별표 1]

| 교육과정 | 대상자 | 평가사 | 내부심사자 | | 교정기관 | | 시험기관 | | 검사기관 | | 표준물질 생산기관 | | 메디칼 시험기관 | |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| | | 평가사 | 내부심사자 | 품질책임자 | 기술책임자 | 품질책임자 | 기술책임자 | 품질책임자 | 기술책임자 | 품질책임자 | 기술책임자 | 품질책임자 | 기술책임자 | 품질책임자 | 기술책임자 | |
| 평가사양성교육 | | ○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내부심사교육 | | ○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취득방법 | KS Q ISO/IEC 17025 운영실무 | | | ○ | ○ | ○ | ○ | | | | | | | | | | |
| | KS Q ISO/IEC 17020 운영실무 | | | | | | | ○ | ○ | | | | | | | | |
| | KS A ISO 17004 운영실무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| | | | | |
| | KS P ISO 15189 운영실무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| | | |
| | KS Q ISO/IEC 17043 운영실무 | | | | | | | | | | | | | ○ | ○ | ○ | |
| | 측정불확도 추정 | ○ | | ○ | ○ | ○ | ○ | | | ○ | ○ | | ○ | ○ | ○ | | |
| 취득방법 | 정밀측정교육 | | | ○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평가사보수교육 | ○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취득방법 | 종사자보수교육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
[별지 제1호 서식]

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에 따라 KOLAS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.

[별지 제2호 서식(3)]

이 보고서는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38조, 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 제37조,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운영요령 제36조, 공인메디칼시험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7조,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6조 및 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요령에 의거 지정 신청자의 품질경영시스템 및 운영능력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반장과 평가반원이 전원 합의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[별지 제4호 서식]

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38조,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7조,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6조, 공인메디칼시험기관 인정제도운영요령 제37조,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36조 및 교육기관지정및교육과정운영요령에 의거 위와 같이 KOLAS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[별지 제2호 서식(3)]

----- 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에 따라 -----

[별지 제4호 서식]

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-----

